

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소개 ■

2011. 10. 25. 선고 2011헌바9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: 합헌결정

김영수 변호사

1.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,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1호 중 "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"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'법인장부'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2003년 4월 24일 2002헌바71, 86 결정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한 구 지방세법(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) 제111조제5항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고, 1995년 7월 21일 92헌바40 결정에서 구 지방세법(1988. 12. 26.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1조제5항제3호 '법인장부'에 관한 부분이 개인에 비하여 법인에게 불리하게 자의적인 차별을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.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헌법재판소 선례들의 심판대상에 모두 포함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고, 위 선례들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표준 설정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거래의 주체를 따지지 않고 제도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법정한 것에 불과하며, 개인을 법인이나 국가 등에 비해서 불리하게 취급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 선례들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에도 유효하며,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도 이를 그대로 원용하였습니다.

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표준을 정한 규정일 뿐 재판청구권과는 관련이 없고,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결국 실제 취득가액보다 다액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액부담의 증가라고 할 것인데, 이는 실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는 될 수 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제도적으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신고

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사유로는 보기 어렵고,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리 헌법 제23조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사유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고,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.

2. 다운로드 : [2011헌바9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1호 등 위헌소원](#)